

6. 再當籤 禁止區域 指定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건설부는 '91. 10. 22 주택의 재당첨제한구역으로서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, 퇴계원면, 화도면을 신규로 지정키로 하였다.
- 이는 지난 '91. 4.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시 6개월 이후부터 건설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처음 지정한 것으로서 경기도 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.
- 이로써 재당첨금지구역은 이미 청약예금을 실시하고 있는 다음 57개 시·군에 남양주군(와부읍, 퇴계원면, 화도면)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.

다 음

-55개시 :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수원, 안양, 부천, 광명, 성남, 의정부, 구리, 안산, 평택, 춘천, 원주, 강릉, 청주, 충주, 제천, 천안, 전주, 구리, 이리, 김제, 목포, 여수, 여천, 포항, 경주, 안동, 밀양, 김천, 동광양, 의왕, 순천, 미금, 시흥, 송탄, 경산, 하남, 정주, 동두천

-2개군 : 고양, 용인

- 재당첨금지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이미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일정기간(국민주택 10년, 민영주택 5년)이 경과하여야 이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새로이 이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재당첨금지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도 위 기간이 지나야 가능한 것이다.
- 건설부는 앞으로도 주택투기와 과열조짐이 있고 시·도의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재당첨금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.